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52호

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 외 10명

다.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16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최근 시행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항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체육시설과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, 서울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체육회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자생력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시민 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감면 대상에 시 또는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를 포함함(안 제10조제3호)

나.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를 포함함(안 제10조제4호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, 시 단위 종목별대회의 경우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나. 개정의 타당성

- 동 조례안의 관련 법령인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근거가 있음.

<관련 법령>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 - 다. 삭제 <2016. 8. 2.>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7. 그 밖에 사용료 감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다. 사용료의 감면(안 제10조)

- 동 조례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를 전용사용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임.
- 전용사용료 면제대상으로 기존에는 시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였으나, 시의 승인을 받아 시체육회·시장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)에 근거가 있어 법적요건은 갖추.

다만 시행령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에서 제2호 체육회의 주관하는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

있는 바, 시행령과 동일하게 ‘주최하는 경기·행사’를 ‘주관하는 경기·행사’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가 목에 ‘시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’는 현행과 같이하고, 마 목을 신설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시체육회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, 장애인체육회 등이 포함되며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약 4천3백만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.

<비용추계 결과>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○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 (안 제10조제3호 라목)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218,110
	소계(b)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218,110
	□ 총 비용(a-b)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218,110

※ 총비용 = **218,110천원**(연평균 43,622천원)

- 세입감소가 다소 예측되나, 시행령 제4조의2 제7호에서 ‘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’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- 종합하여 보건대, 안 제10조 제3호의 가에서 다목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, 라목을 신설하여 ‘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행사’로 하며, 마목을 신설하여 ‘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’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제안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 ~ 2. (생략) 3.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<u>가. 시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</u> 나. ~ 다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 ~ 2. (현행과 같음) 3.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<u>가. 시 또는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</u>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</u>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 ~ 2. (현행과 같음) 3.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</u> <u>마.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</u>

의안번호
2252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	소관 상임위	
	이종환 의원 (보건복지위원회)	2024. 10. 16.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〈제안이유〉 ○ 최근 신설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은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, 수의 관리위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○ 서울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, 市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면제를 통해, 시민 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				
	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市 승인을 받은 市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, 市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를 전용사용료 면제대상에 추가(안 제10조제3호라목)				
추진경과	○ 2024. 10. 16. 조례안 발의(대표 발의 : 이종환 의원) - (발의자) 강석주, 김규남, 김원중, 문성호, 이성배, 이숙자 의원 등 11명				
부 검토의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(○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근거인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는 체육회·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조례안 수정 - 수정① : (개정안) ~주최하는 → (수정) ~주관하는 - 수정② : 의미 명확화를 위해 신설내용은 ‘라’목으로 별도 규정 ○ 개별 종목단체에서 시행하는 ‘市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’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기 어려움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방준흠(☎2133-2678)